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치과위생사의 인지도

김지현 · 황지민 · 박용덕<sup>†</sup>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사회치과학교실 및 구강생물연구소

### Dental Hygienists' Awareness of Long-term Senior Care Insurance System

Ji-Hyun Kim, Ji-Min Hwang and Yong-Duk Park<sup>†</sup>

Department of Preventive and Social Dentistry & Institute of Oral Biology,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Seoul 130-701,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ver dental hygienists who work for metropolitan dental hospitals or clinics in Seoul city, Incheon city and Gyeonggi province from January to April 2009 and profile their awareness of Long-term Senior Care Insurance System (hereinafter called 'LSCI (System)', so that it may provide material reference data to contribute to expanding and establishing oral health medical services in the framework of LSCI System. As a result, this study could co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1. It was found that the highest priority of dental hygienists' visiting oral hygienic services under LSCI System was focused on 'caring and preventive treatment', and their secondary priority was focused upon 'oral health education.' 2. In response to a question item about whether dental hygienists need dentist's prescription in written before performing their visiting oral hygienic services, it was found that 38.2% dental hygienists answered 'Yes (necessary)' and 61.8% answered 'No (unnecessary).' 3. In response to a question item about whether dental hygienists may open up long-term senior care center, it was found that absolute majority of dental hygienists (93.4%) answered 'No' and only 6.6% dental hygienists answered 'Yes.' The standardized professional education are thought to be needed to be developed aiming at the success in oral-hygiene service within a LSCI, by strengthening professionalism in dental hygienists.

**Key words** Awareness, Dental hygienist, Long-term senior care insurance system

## 서 론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노인문제에 대하여 많은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으며<sup>1)</sup>,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는 노인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하고 있다<sup>2)</sup>. 인구의 고령화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정책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적 상황에 의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sup>3)</sup>.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0년도에 노인요양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5년부터 8개의 시·군·구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sup>4)</sup>, 2007년 5월부터는 기존 8개 시·군·구 지역에 5개의 시·군·구 지역을 추가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하다가 2007년 4월 2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sup>5)</sup>.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서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노인 부양부담 경감,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 증가, 사회서비스 확대, 일자리 확대, 고령 친화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였다<sup>6)</sup>.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에 이환되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sup>7)</sup>. 노인장기요양법에 명시된 장기급여 종류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가 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는데, 이 중 치과위생사는 방문간호를 할 수 있다<sup>5)</sup>.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Long-term senior care insurance system: LSCI)에서 구강보건의료영역은 방문간호 중 방문

<sup>†</sup>Corresponding author  
Tel: 02-961-0344  
Fax: 02-964-9814  
E-mail: iam2875@khu.ac.kr

구강위생업무인데, 이는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 감독과 지시서에 따라서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구강위생업무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sup>7)</sup>.

구강건강은 신체건강의 유지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구강위생업무가 포함되었으며, 구강위생업무는 주로 구강보건교육 영역과 예방치치 영역이므로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방문구강위생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치과위생사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 치과병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2009년 6월을 기준으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 등록되어있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치과위생사 수를 확인하여, 치과위생사수를 기준으로 비례대비 층화 표본추출방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치과위생사 7,216명 중에서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339명의 치과위생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09년 1월부터 우편과 팩스로 설문지를 배포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게 하여 4월까지 회수하였고, 총 296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87.3%이었으며, 이중 무응답이 많은 80부를 제외한 259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에 대하여 선행 연구된 황과 박<sup>3)</sup>, 박<sup>8)</sup>과 이<sup>9)</sup>의 연구에서 신뢰도가 입증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항목의 내용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6문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 8문항(방문구강위생업무에서 구강보건교육 영역과 관리적, 예방적 처치 영역 중 중요한 우선순위 1문항, 구강보건교육 영역 중 교육하여야 할 중요분야 1문항, 관리적, 예방적 처치 영역 중 교육하여야 할 중요분야 1문항, 방문구강위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치과의사의 지시서가 필요한 것에 대한 인지여부 1문항, 방문구강위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치과의사의 지시서가 필요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의견 1문항, 노인장기요양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인지여부 1문항, 노인장기요양소 개설의향정도 1문항, 치과의사 지시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항목 중에 방문구강위생업무를 실시하

기 위해서 치과의사의 지시서가 필요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문항과 노인장기요양소의 개설 의향 정도에 대한 문항은 인지도가 높을수록 5점, 낮을수록 1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점수화하였다. 설문지의 Cronbach's  $\alpha$  계수 값은 .857이었다.

###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패키지 버전 12.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근무경력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학력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넷째,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였다.

## 결 과

###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26-30세가 47.1%로 가장 많았고, 25세 이하가 26.6%이었으며, 거주 지역은 서울특별시가 45.9%, 경기도 45.6%, 인천광역시가 8.5%이었다. 근무지의 형태는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58.3%, 치과병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41.7%이었다. 치과위생사의 근무경력은 4년 이상-9년 미만인 37.5%, 1년 이상-4년 미만이 34.4%이었으며, 최종학력은 전문학사가 58.3%로 가장 많았으며, 학사는 21.6%이었고, 치과위생사의 가족 중 중풍이나 치매노인, 거동 불편한 만성질환자가 없는 경우가 89.6%, 있는 경우가 10.4%로 나타났다(Table 1).

###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치과위생사의 방문구강위생업무에 대한 인지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방문간호 중 방문구강위생업무가 포함되어있는데, 방문구강위생업무에서 구강보건교육 영역과 관리적, 예방적 처치 영역 중 중요한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결과는 Table 2와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치과위생사의 방문구강위생업무 중 1순위는 '관리적, 예방적 처치 영역'이 69.1%로 높게 나타났고, 2순위는 '구강보건교육 영역'이 69.5%로 높게 나타났다(Table 2). 또한 구강보건교육 영역 중에서 의식의 유무와 거동의 여부에 따라 대상자를 교육할 때 어느 분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잇솔질'이 79.9%로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며, '보철물 관리'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Age	Under 25 years	69(26.6)
	26-30 years	122(47.1)
	31-35 years	47(18.1)
	36-40 years	14(5.4)
	Over 41 years	7(2.7)
Residence area	Seoul	119(45.9)
	Incheon	22(8.5)
	Gyeonggi	118(45.6)
Employment	Dental clinic	151(58.3)
	Dental hospital	108(41.7)
Career of duty	Less than 1 years	27(10.4)
	Less than 1-4 years	89(34.4)
	Less than 4-9 years	97(37.5)
	Over 9 years	46(17.8)
Education level	College degree	151(58.3)
	University degree	56(21.6)
	Over master degree	14(5.4)
	The others	38(14.7)
Have or not elderly, chronic disease patient among the family	Yes	27(10.4)
	No	232(89.6)
Total		259(100.0)

**Table 2. Dental hygienist's priority on visiting oral hygiene education in LSCI**

Classification	N(%)	
	1st	2nd
Oral health education part	80(30.9)	180(69.5)
Management, preventive part	179(69.1)	79(30.5)
Total	259(100.0)	259(100.0)

\*LSCI : Long-term senior care insurance system

7.7%, ‘구강위생용품 사용’ 6.6%, ‘식이조절’이 5.8% 순으로 나타났다. 예방적 처치 영역 중에서도 ‘잇솔질 실행’이 6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치태조질 및 치면세마’가 29.0%, ‘불소국소도포 및 불소용액양치’ 3.5%, ‘구취 및 구강건조증 관리’가 3.1%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치과의사 지시서의 필요에 대한 인지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치과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구강위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지시서가 필요하다.

치과위생사가 방문구강위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치과의사의 지시서가 필요한 것에 대한 인지도에서 ‘아니오’

**Table 3. Priority on the oral health education and preventive treatment**

	Classification	N(%)
Health education	Tooth brushing	207(79.9)
	Use of oral hygiene devices	17(6.6)
	Diet control	15(5.8)
	Prosthetics management	20(7.7)
Preventive treatment	Plaque control and oral prophylaxis	75(29.0)
	Oral malodour and xerostomia care	8(3.1)
	Fluoride topical application and fluoride mouth rinsing	9(3.5)
	Tooth brushing	167(64.5)
Total		259(100.0)

**Table 4. Dental hygienist's awareness about needs of dentist's order during visiting oral hygienic treatment depend on their duty career**

Classification	Cognition		Total	p-value
	Yes	No		
Less than 1 years	6(2.3)	21(8.1)	27(10.4)	.026
Less than 1-4 years	36(13.9)	53(20.5)	89(34.4)	
Less than 4-9 years	32(12.4)	65(25.1)	97(37.5)	
Over 9 years	25(9.7)	21(8.1)	46(17.8)	
Total		99(38.2)	160(61.8)	259(100.0)

라고 응답한 비율이 61.8%로 높게 나타났고, ‘예’라고 응답한 치과위생사는 38.2%로 나타났다. ‘예’라고 응답한 치과위생사 중에서 근무경력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시서 필요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1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p < 0.05$ )(Table 4).

치과위생사의 학력에 따른 방문 구강위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치과의사의 지시서가 필요한 것에 대한 인지정도에서 치과위생사의 학력이 ‘전문학사’인 경우가 2.91, ‘학사’인 경우가 2.65, ‘석사’인 경우가 2.13 등의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Table 5).

**Table 5. Dental hygienist's awareness about needs of dentist's order depend on their academic career**

Classification	N	M±SD	p-value
College degree	53	2.91±.75	.002
University degree	23	2.65±1.11 <sup>a</sup>	
Over master degree	8	2.13±.99 <sup>a</sup>	
The others	15	3.47±.51 <sup>b</sup>	
Total		99	

\*Likert scale : maximum=5, minimum=1

<sup>a,b</sup>by Scheffe's multiple range test; values with same superscript letter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 < .05$

Table 6. Awareness about instituting LSCI

Classification	N(%)
Yes	17(6.6)
No	242(93.4)
Total	259(100.0)

\*LSCI : Long-term senior care insurance system

Table 7. Opinion about instituting long-term sanatorium for the elderly depending on academic career

Classification	N	M±SD	p-value
College degree	151	2.89±.87	<.001
University degree	56	3.48±.85	
Over master degree	14	3.00±.88	
The others	38	2.92±.88	
Total	259		

\*Likert scale : maximum=5, minimum=1

Table 8. Correlation awareness about LSCI

	Cognition about needs of dentist's order	Opinion about instituting long-term sanatorium for the elderly
Cognition about needs of dentist's order	1	
Opinion about instituting long-term sanatorium for the elderly	-.300**	1

\*\*p &lt; 0.01

#### 4. 노인장기요양소 개설에 대한 인지도

치과위생사가 노인장기요양소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지도에서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이 93.4%로 현저히 높았고,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6.6%로 낮게 나타났다(Table 6).

노인장기요양소 개설의 향정도에 대한 결과는 치과위생사의 학력이 '학사'인 경우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석사'인 경우가 3.00으로 나타났으며, '전문학사'는 2.89로 가장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Table 7).

####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지정도에 대한 변수간의 상관관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지정도에 대한 변수 중 '방문구강위생업무 수행 시 치과위생사의 지시서가 필요한 것에 대한 인지정도'와 '노인장기요양소 개설의 향정도'와의 관계에서 음(-)의 상관관계( $r = -0.300$ )를 보여주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Table 8).

## 고 찰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

이 증가하였고,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출산율이 감소하여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인구노령화사회가 되었다<sup>10)</sup>. 지속적인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만성질환인 치매, 중풍 등의 높은 유병률로 장기 요양 필요 노인도 급속히 증가하였고<sup>11)</sup>, 가족에 의한 요양보호의 한계, 노인부양의 책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노인의료비의 증가,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인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문제가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되어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sup>12)</sup>.

우리나라는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8년 7월부터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인구와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들에게 간병 및 신체,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sup>5)</sup>. 이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sup>7)</sup>에 제시된 장기요양급여 종류 가운데 구강보건의료영역에서 방문간호는 치과위생사가 치과위생사의 지시서를 받아서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구강위생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구강보건의료영역에서 방문구강위생업무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방문간호 중 방문구강위생업무가 포함되어있는데, 방문구강위생업무에서 구강보건교육 영역과 관리적, 예방적 처치 영역 중 중요한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결과 1순위가 '관리적, 예방적 처치 영역'이 69.1%로 높게 나타났고, 2순위는 '구강보건교육 영역'이 69.5%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구강보건교육 영역 중에서 의식의 유무와 거동의 여부에 따라 대상자를 교육할 때 어느 분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잇솔질'이 79.9%로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며, 예방적 처치 영역 중에서도 중요한 분야가 '잇솔질 실행'이 6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과 김<sup>13)</sup>은 노인인구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의 부재가 노인의 구강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그 해결 방법으로 노인인구에 대한 잇솔질 교육과 구강보건관리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주와 김<sup>14)</sup>은 노인들에게 잇솔질의 중요성 및 보조구강위생용품의 사용법 등의 구강보건교육이 절실하다고 하였으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자인 노인들에게도 구강보건교육 및 관리적, 예방적 처치영역에서 중요한 분야에 대한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치과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구강위생업무를 하기 위해 치과위생사의 지시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지도에서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이 61.8%,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38.2%로 모르는 경우가 알고 있는 경우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치과위생사가 노인장기요양소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지도에서도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이 93.4%로 현저히 높았고,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6.6%로 극히 낮은 비율로 나타나 치과위생사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 등<sup>15)</sup>의 연구에서 방문간호 중 구강 위생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인지정도가 2.54, 구강위생 요양급여 내용에 대한 인지정도가 2.43으로 조사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인지도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치과위생사의 인지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가족 중 중풍이나 치매노인, 거동 불편한 만성 질환자가 없는 경우가 89.6%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핵가족화로 인해 노인과 함께 생활하지 않아서 가족 중에 중풍이나 치매노인, 거동 불편한 만성질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관심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관심 또한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노인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치과위생사 양성과정<sup>16)</sup>”과 보수교육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구강위생업무를 수급자에게 제공해야 할 장기요양요원인 치과위생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므로 국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장기요양요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인지도를 높여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안 등<sup>15)</sup>은 국민의 구강보건에 앞장서고 책임져야 할 치과종사자가 정책 시행에 있어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이를 각 세미나 및 보수교육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여 본 연구자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인 방문구강위생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치과위생사의 인지도를 알아본 것에 대해 의의가 있다. 하지만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 결과와 충분한 비교분석을 할 수 없었으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한정지어 표본을 추출하였고, 회수된 설문지수가 적어 모집단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으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을 추출하고, 치과의사와 치과의료소비자를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인지도에 대해서 연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구강보건의료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치과위생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자세와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요 약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간호 중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인 방문구강위생이 포함되어있으므로 치과위생사의 인지도를 파악하고자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치과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2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치과위생사의 방문구강위생업무 중 중요한 업무순위에 대해 1순위가 ‘관리적, 예방적 처치 영역’, 2순위는 ‘구강보건교육 영역’으로 나타났다. 구강보건교육 영역 중에서 중요한 교육 분야는 ‘잇솔질’이 79.9%로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며, 예방적 처치 영역 중에서도 ‘잇솔질 실행’이 6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치과위생사가 방문구강위생업무를 하기위해 치과의사의 지시서가 필요한 것에 대한 인지여부에서 38.2%가 ‘예’, 61.8%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예’라고 응답한 치과위생사 중 근무경력이 ‘1년 이상-4년 미만’인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시서 필요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1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p < 0.05$ ).
3. 치과위생사가 노인장기요양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지에 대해 93.4%가 ‘아니오’, 6.6%가 ‘예’라고 응답하였다. 학력에 따른 노인장기요양소 개설의향정도는 치과위생사의 학력이 ‘학사’인 경우가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p < 0.001$ ).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지정도에 대한 변수 중 ‘방문구강위생업무 시 치과의사의 지시서가 필요한 것에 대한 인지정도’와 ‘노인장기요양소 개설의향정도’와의 관계에서 음(-)의 상관관계( $r = -0.300$ )를 보여 주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p < 0.01$ ).

이상의 결과로 보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자에게 구강위생업무를 제공해야 할 치과위생사의 인지도가 낮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치과위생사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인지도를 높여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이현옥, 김진: 노인의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건강관리행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위생과학회 8(2): 57-63, 2008.
2. Mui. AC, Burnette. D: Long-term care service use by frail elders : Is ethnicity a factor?. The Gerontologist 34(2): 190-198, 1994.
3. 황지민, 박용덕: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인식 및 요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33(3): 211-226, 2009.
4. 박수천: 일본 개호보험을 통해 본 지속가능한 한국형 노인요양제도의 전제. 노인복지연구 27: 49-83, 2005.

5. 신리혜 외: 한국노인요양시설 구강 위생현황과 일본 노인요양보험법 비교를 통한 치과 의사의 역할과 전망. 대한치과보철학회지 46(1): 83-91, 2008.
6.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정안 설명자료. 2006.
7.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 2009.5.21][법률 제9693호. 2009.5.21, 일부개정]
8. 박미숙: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인식과 과제에 관한 연구 (울산지역사회복지 관련 인력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9. 이원필.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조사(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0. 김지현, 박용덕: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치과 의료공급자의 인식. 대한구강보건학회지 33(4): 644-652, 2009.
11. 권민영: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방문간호사의 인식.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2. 송신섭: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극동사회복지저널 4: 85-104, 2008.
13. 김지영, 김진범: 노인의 생활양식과 구강건강관리행동이 구강내 mutans streptococci, lactobacillus 및 candida albicans 집락수에 미치는 영향. 대한구강보건학회지 31(1): 115-125, 2007.
14. 주은주, 김동기: 한국 노인 본인이 인지한 양대 구강병 관련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33(1): 71-81, 2009.
15. 안권숙, 지민경, 민희홍: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치과종사자의 인식도 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9(1): 169-180, 2009.
16. 박정란 외: 노인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치과위생사 양성과정. 대한치과위생사협회 2008.

(Received January 22, 2010; Revised February 20, 2010;  
Accepted February 21, 2010)

